

# 투자 권유 준칙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①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과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현재 투자자금 성향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마다 평가하여 현재의 투자자금성향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금융투자상품이 권유되지 않도록 투자자성향평가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자정보 파악시 원금보존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투자상담 요청 시 투자자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또는 「정보미제공 확인서」를 청구하더라도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 제 4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 1 절 투자자정보

####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 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과 임직원이 파악한 투자자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담보고서에 별도로 기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 1항부터 3항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에 따른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 하여야 한다.

## 제 2 절 투자권유

### 제9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9조1항에 따른 [별표1]의 적합성판단기준과 별지 제5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ㄱ.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ㄷ.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 3 절 설명의무

#### 제14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② 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2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1항부터 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⑦ 임직원등은 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3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6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3]과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7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①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9조 (계약 후 확인절차)

- ①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투자자(재계약, 추가계약은 제외)로서 만 65세이상 개인고객의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유선으로(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 절차가 관계법규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21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①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및 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항 및 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22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2009.2.4.)

이 준칙은 2009년 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1.15.)

이 준칙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5.26.)

이 준칙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3.1.)

이 준칙은 2015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3.1.)

이 준칙은 201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5.18.)

이 준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7.1.)

이 준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8.19.)

이 준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b>투자자구분</b>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 )	
	<b>취약투자자 여부</b>	<b>일반투자자 중 취약투자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b> ※ 취약한투자자 여부에 대한 동의는 강화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상품 계약시 불이익 사항은 다른 정보보다 우선 설명받기 위해 수집하는것입니다. 항목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b>상장법인 임원여부</b>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 해당(법인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 _____ ) 고령투자자, 미성년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문맹자 등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취약투자자에 해당하는 이유 기입

### 일반투자자용 정보확인

<b>기존 정보 존재 여부</b>	<input type="checkbox"/> 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기 작성한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작성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있음
<b>투자예정기간</b>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b>금융상품 투자경험 (복수선택가능)</b>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b>주식</b> ,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가 하는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b>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원금비보장 ELS 포함)</b>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      년      월)

<b>금융지식 수준/이해도</b>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음 : 투자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 본 경험이 없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음 : 모든 금융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b>투자목적</b>  <small>※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상승</small>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b>재산상황</b>	<b>(개인) 연소득 현황</b>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7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천만원~1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7 954 874 999"><b>(개인) 총 자산규모(순자산)</b></td> <td data-bbox="882 954 1441 999"><b>(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b></td> </tr> <tr> <td data-bbox="387 1010 874 1055"><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td> <td data-bbox="882 1010 1441 1055"><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td> </tr> <tr> <td data-bbox="387 1066 874 1111"><input type="checkbox"/> 2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td> <td data-bbox="882 1066 1441 1111"><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200억 이하</td> </tr> <tr> <td data-bbox="387 1122 874 1167"><input type="checkbox"/> 30억 초과</td> <td data-bbox="882 1122 1441 1167"><input type="checkbox"/> 200억 초과</td> </tr> </table>	<b>(개인) 총 자산규모(순자산)</b>	<b>(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b>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2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초과	<input type="checkbox"/> 200억 초과
	<b>(개인) 총 자산규모(순자산)</b>	<b>(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b>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2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초과	<input type="checkbox"/> 200억 초과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87 1189 874 1234"><b>(개인.법인)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b></td> <td data-bbox="882 1189 1441 1234"><b>(법인) 당기순이익 규모</b></td> </tr> <tr> <td data-bbox="387 1245 874 1290"><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td> <td data-bbox="882 1245 1441 1290"><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10억 이하</td> </tr> <tr> <td data-bbox="387 1301 874 1346"><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이하</td> <td data-bbox="882 1301 1441 1346"><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td> </tr> <tr> <td data-bbox="387 1357 874 1402"><input type="checkbox"/> 40% 초과</td> <td data-bbox="882 1357 1441 1402"><input type="checkbox"/> 100억 초과</td> </tr> </table>	<b>(개인.법인)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b>	<b>(법인) 당기순이익 규모</b>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초과	<input type="checkbox"/> 100억 초과	
<b>(개인.법인)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b>	<b>(법인) 당기순이익 규모</b>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초과	<input type="checkbox"/> 100억 초과								
<b>향후 자신의 경제상황(개인) 또는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b>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b>투자위험 감수능력</b>  <small>※ 원금보존 중시시 계약 불가</small>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b>법인업력 (설립일기준)</b>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4년 <input type="checkbox"/> 5~9년 <input type="checkbox"/> 10~14년 <input type="checkbox"/> 15년 이상								
<b>연령(개인)</b>	<input type="checkbox"/> 3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31~40세 <input type="checkbox"/> 41~50세 <input type="checkbox"/> 51~65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초과								

전문투자자용 정보확인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시)

유형	내용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연1회 변동사항을 조사합니다.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중위험)	안정추구형 (저위험)	안정형 (초저위험)
자산배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형</li> <li>- Growth형, Value형, Dividend형, K-Leaders형</li> <li>· 해외주식형</li> <li>- China Growth형, Global Super Growth형</li> </ul>			가입 불가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 투자일임계약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 운용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니다.
3.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5. 본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6. 투자일임계약은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클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7.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8. 본인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 및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인)

대리인 : (서명/인)



[별지 제2호]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변경 확인서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에 의거 연1회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고자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 **기존에 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작성하시어 즉시 당사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본 문서의 발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기존정보와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이 답신한 투자자 성향과 일임계약 이후 당사의 임직원이 정성적으로 파악한 투자자 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다 보수적인 투자자 성향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일임자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주권상장법인 임원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작성하였으나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작성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 (법인명 : )

※ 투자자정보확인 Part1(기초정보)\_개인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b>재산상황</b>	<b>1) 총 자산규모(순자산)</b>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초과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
	<b>2)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b>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초과	
	<b>3)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b>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b>투자목적</b>	<b>4) 투자목적</b>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 위험도 커짐
	<b>5)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b>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손실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
<b>6) 투자 예정기간</b>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주식일임)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ELS일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 (주식일임 : 1년이상, ELS일임 : 3년이상)

※ 투자자정보확인 Part1(기초정보)\_법인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b>재산상황</b>	<b>1) 자기자본(자산-부채) 규모</b>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2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200억원 초과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
	<b>2) 당기순이익 규모</b>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10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 초과	
	<b>3) 향후 법인 수익에 대한 예상</b>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b>투자목적</b>	<b>4) 투자목적</b>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
	<b>5)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b>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b>6) 투자 예정기간</b>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주식일임)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ELS일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 (주식일임 : 1년이상, ELS일임 : 3년이상)







[별지 제4호]

## 계약절차의 적정성 확인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투자자로서 만 65세 이상 개인고객의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계약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

- 계약자 성명 :
- 계약일자 :
- 계약담당 직원 :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객이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고객이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는지 확인

고객의 투자자유형 및 세부유형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였는지 확인

고객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확인 일자 및 시간 :
- 확인자 : (서명/인)

※ 기타 특이사항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2장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3조(본사 전담부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동증권, 후순위 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제5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확인)**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팀장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관리직 직원(팀장 등)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팀장 등)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②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 **제3장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7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4장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제11조(투자권유 유의 상품 판매 자제)

-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③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한후 판매할 수 있다.

### 제12조(조력자와의 상담)

- ①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5장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기록·유지할 수 있다.

[별표 1]

## 적합성 판단 방식

###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투자경험 등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는 유효기간동안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고,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연1회 조사하여 변경 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

### □ 고객 유형 분류

- |                       |                       |
|-----------------------|-----------------------|
|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 60점초과~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 ○ 40점초과~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 20점초과~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 ○ 20점이하 : 안정형         |                       |

### 문항별 배점

<개인>

구분	1	2	3	4	5	비고
1) 투자경험	2	4	6	8	10	중복응답시 가장 높은 점수 적용
2) 금융지식수준	0	4	8	10	-	
3) 연소득 현황	2	4	6	8	10	
4) 총자산 규모	2	4	6	8	10	
5) 총자산대비 금융상품비중	10	8	6	4	2	
6) 향후경제상황	10	8	6	4	2	
7) 투자목적	10	8	6	4	2	
8) 투자위험태도	불가	3	5	10	-	원금 보존 희망시 가입불가
9) 투자예정기간	7	8	9	10	-	1년이상 주식일임 가능
10) 연령	2	8	10	8	2	

<법인>

구분	1	2	3	4	5	비고
1)투자경험	2	4	6	8	10	중복응답시 가장 높은 점수 적용
2)금융지식수준	0	4	8	10	-	
3)당기순이익규모	2	4	6	8	10	
4)자기자본규모	2	4	6	8	10	
5)당기순이익규모	10	8	6	4	2	
6)향후 수익예상	10	8	6	4	2	
7)투자목적	10	8	6	4	2	
8)투자위험태도	불가	3	5	10	-	원금 보존 희망시 가입불가
9)투자예정기간	7	8	9	10	-	1년이상 주식일임 가능
10)업력(설립일기준)	2	8	10	8	2	

100점 만점중 60점 이하는 투자 '부적합'

점수별 구분	적합성판단
<input type="checkbox"/>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60점 초과 : 적극투자형	적합
<input type="checkbox"/>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input type="checkbox"/> 40점 이상 : 안정추구형 <input type="checkbox"/> 20점 이상 : 안정형	부적합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주식일임은 1년이상 이어야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

투자자유형에 따른 자산배분유형

구분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중위험)	안정추구형 (저위험)	안정형 (초저위험)
일임자문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자산배분 유형	· 국내주식형 - Growth형, Value형, Dividend형, K-Leaders형 · 해외주식형 - China Growth형, Global Super Growth형		가입불가		

[별표 2]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

구분		장외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65세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65세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 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위험 : 주의와 경고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별표 3]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 ~ 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장내 파생상품		선물·옵션				